

▣ 직접생산확인제도 및 직접생산확인기준 안내

I 제도 목적

직접생산확인제도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서 낙찰 후에 대기업제품, 수입제품의 납품 또는 하도급 생산납품 행위나 수의계약이 가능한 각종 법인단체,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의 명의를 빌려 수의계약 후 하청 생산한 제품 등의 납품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

*관련법령 :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

II 주요내용

-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이 공공구매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직접생산 능력보유 여부의 확인을 받아야 함.

○확인방법

- ① 직접생산확인은 품목에 따라 생산공장, 생산설비, 생산공정, 필수인력, 기타 관련 자료 등을 제출받아 서류심사
- ② 조사원이 생산공장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 확인

○확인대상

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대상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결과 낙찰자로 결정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자 또는 수의계약방식으로 1천만원이상의 소요제품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 계약상대자로 결정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자

○확인기관

당해 계약의 당사자인 공공기관의 장이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나 중소기업청 장이 공공구매 종합정보를 통해 제공하는 증명서로 대체 가능

○제재조치

직접생산하지 않은 제품을 납품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직접생산확인이 취소되며 6개월 ~ 1년간 재신청 불가

○처리기간

14일 이내(토요일,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제외)에 처리(운영요령 제30조제7항)

▶진행절차



III

세부품명별 직접생산 확인 실태조사 제출 서류 안내

중기간경쟁제품명	세부분류(중기간경쟁제품)		제출서류
	물품분류번호	세부분명	
출입통제시스템	4617161901	출입통제시스템	다운로드
폐쇄회로 텔레비전시스템	4617162201	영상감시장치	다운로드
	4617161002	보안용카메라	다운로드
	4616151601	차량번호판독기	다운로드